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박성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69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	4
가. 제정안의 취지 및 제정 필요성	4
나. 제정안의 구성 체계	9
2. 조문별 검토	10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10
나.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13
다.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의 설치 (안 제7조 및 제8조)	18
라. 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의 시행 등(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22
마.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특례 (안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28
바. 보칙 및 벌칙	46
사. 부칙	4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30.
3. 회부연월일 : 2024.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을 역점 추진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일극체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바,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전략과 이를 위한 맞춤형 특례의 제도화가 필요한 실정임.

석유·가스·원자력 등 에너지산업과 함께 자동차·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했던 울산·포항·경주권의 해오름산업벨트는 지역소멸과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하여 그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가운데, 지방균형발전 시대에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목표로 이차전지 등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해소 및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 합리적 규제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오름산업벨트 관할 광역지방자

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 합리적 규제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오름산업벨트는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및 경주시 관할구역으로 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오름산업벨트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5년마다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을 구성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종 특례를 둠(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 및 교육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환경·산업 분야에 대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예산, 장비 및 인력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위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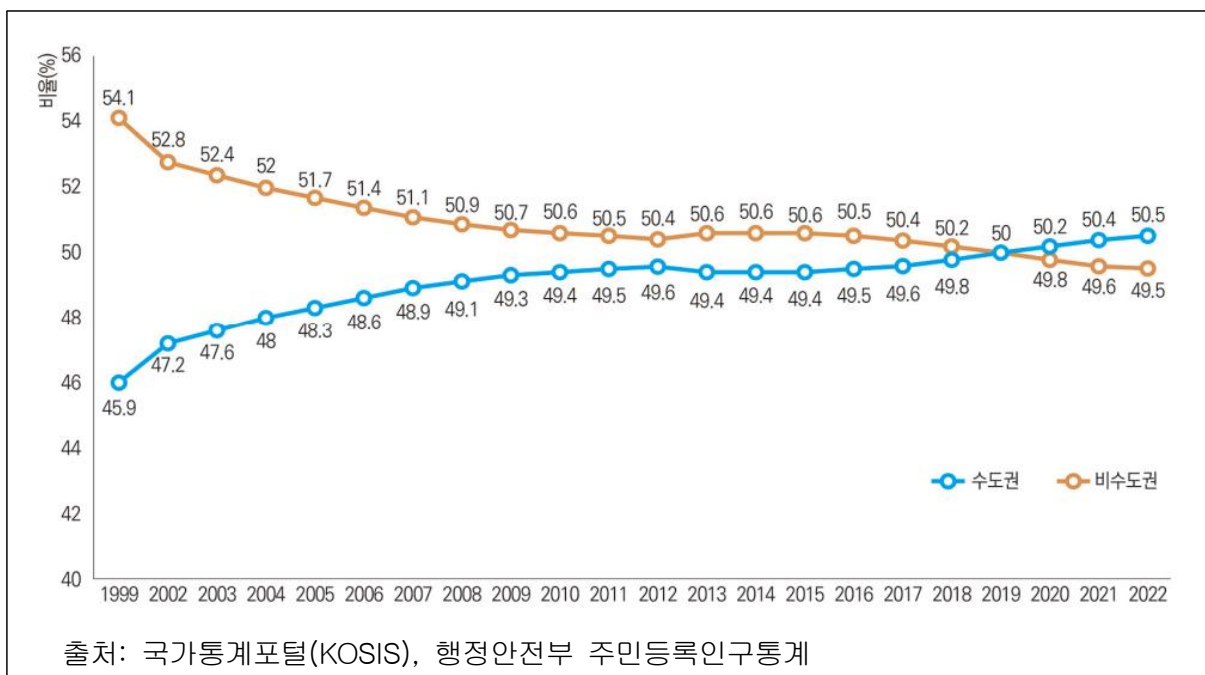
1.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취지 및 제정 필요성

2020년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였으며,

인구분포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최근 20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점점 심화하다가 2012년 이후 정체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2017년 이후 다시 수도권으로의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5%임.¹⁾

<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비율(1999-2022) >



1)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2023.12.31.), 국회미래연구원

또한,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²⁾ 2001~2014년(전국 평균 4.2%)과 2015~2022년(전국 평균 2.5%) 두 기간의 지역 경제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①서울(3.1%→2.5%)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밀집한 경기(6.1%→4.5%)는 성장률이 소폭 하락한 반면, ②울산(2.8%→-0.6%), 충남(6.6%→2.7%), 경북(4.8%→0.1%), 경남(4.3%→0.6%) 등 비수도권의 제조업 특화 지역들은 3%p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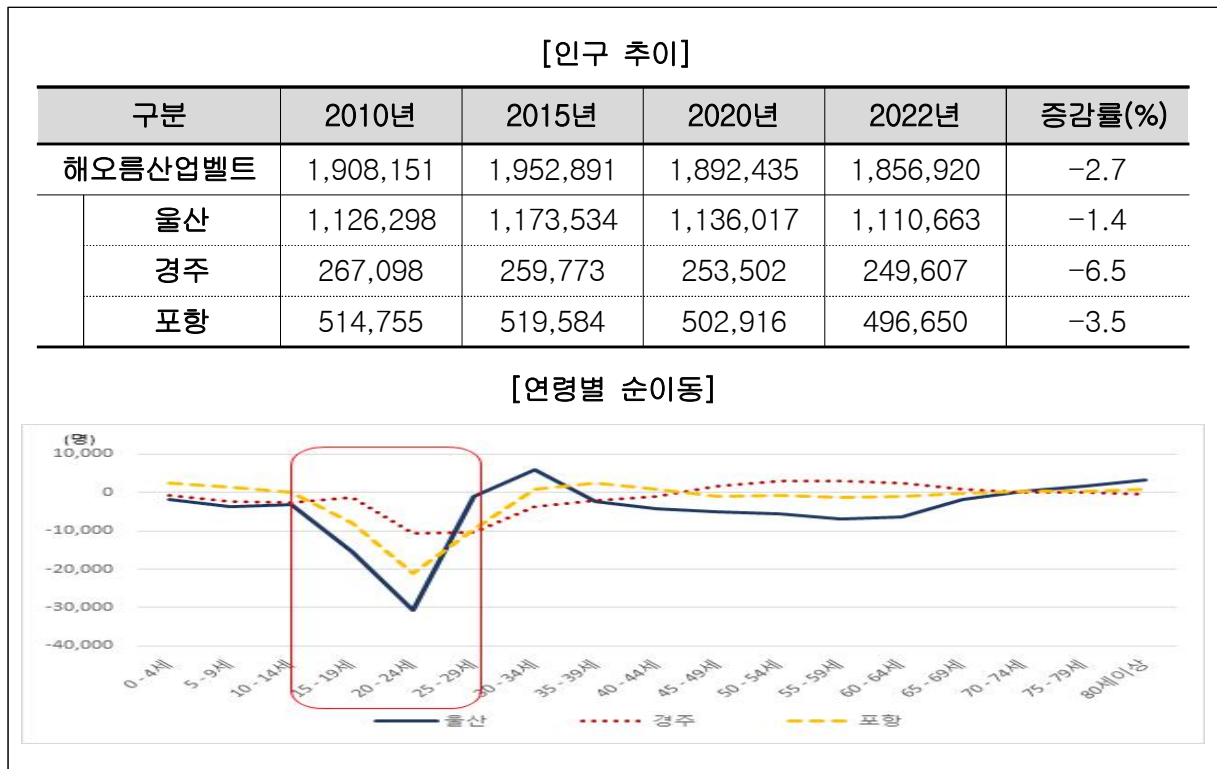
수도권의 전국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51.6%(2001~2014년)에서 70.1%(2015~22년)로 상승하여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정도가 2015년 이후 갈수록 증가하여 수도권 일극체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했던 울산-경주-포항권의 해오름산업벨트³⁾는 지역소멸과 산업구조 전환기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음.

울산·경주·포항의 인구는 2022년 기준 약 190만명이며, 지난 10여년간 2.7%(51,231명)가 감소하였으며, 제조업 부진에 따른 구조조정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울산, 포항의 경우 연평균 1만명 이상의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의 인구유출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첨단산업분야(반도체, 바이오, 디지털 등) 수출에서 수도권은 전국의 약 50%를 차지하지만, 해오름산업벨트는 3.6%에 불과한 실정임.

2)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24년 3월), [이슈 분석: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

3) 2016년 6월 울산-포항간 고속도로의 개통을 계기로 동해남부권의 인접 지방자치단체 3개 도시(울산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및 경주시)간 해오름동맹이 결성되어 현재까지 다양한 상생협력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해오름산업벨트 인구현황>



※ 자료 : 울산광역시

이에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남부권 거점도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 합리적 규제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관성이 깊은 연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협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이로 인해 특정지역을 위한 특례와 지원을 규정한 특별법 촉진 가능성, 국가의 존도를 강화하여 지방분권에 역행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제정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이라 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함)과 유사하게 해오름산업벨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이 담겨있으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전북특별법」, 「강원특별법」의 경우, 그 동안 국토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들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위기 문제해결 등을 목적으로 초광역협력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였는데,

현재 권역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①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②대구·경북, ③광주·전남, ④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서 추진되고 있고,⁴⁾

4)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1.10)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전략,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2024년도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 사업에 3,422억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⁵⁾

해오름산업벨트에 속하는 울산시·포항시·경주시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해안내륙발전법」”이라 함)에 따라 동해안 권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어 규제 특례와 지원을 받고 있음.

한편,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은 재정 여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으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여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제정안의 개별 규정에 대하여는 해오름산업벨트의 지역적 특색 및 필요성의 반영 여부,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집행권한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의 적정성, 개별법과의 정합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도입 여부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법률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각종 특례와 특화지역 지정 등이 포함된 법안으로 국회, 관계부처 등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협력” 참조

5) “부울경 협력 15개 사업에 국비 3,422억 원 반영”, KBS(울산)(2023.12.22.)

나. 제정안의 구성 체계

제정안은 제명을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고, 본칙 22개의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5조	발전계획 수립과 확정
	제6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제3장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의 설치	제7조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조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
제4장 해오름산업벨트발 전사업의 시행 등	제9조	사업시행자
	제10조	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의 시행 승인
	제11조	인·허가등의 의제
제5장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특례	제12조	에너지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13조	개발제한구역해제에 관한 특례
	제14조	비행안전구역·장애물제한표면 및 하천 복개에 관한 특례
	제15조	국가산업단지 지정요청·개발에 관한 특례
	제16조	산업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에 관한 특례
	제17조	광역교통망 구축 등에 관한 특례
	제18조	첨단이차전지·원전 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제19조	의료·교육시설 설치 지원
	제20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
	제21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제22조	권한의 위임
부칙	-	시행일

2. 조문별 검토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1장 총칙은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 합리적 규제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안 제1조), ‘해오름산업벨트’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안 제2조),

해오름산업벨트의 이용, 개발과 보전,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안 제3조), 해오름산업벨트에 대한 국가의 시책 수립·추진 및 지원방안 마련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용·개발과 보전의 조화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4조).

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오름산업벨트의 조성 및 전략적 육성, 합리적 규제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해오름산업벨트”란 전기·가스·석유·원자력 등과 관련된 에너지산업과 자동차·조선 등을 포함한 국가기간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및 경주시(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관할구역을 연계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

제 정 안

한 제5장(제12조부터 20조까지)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5조에 따른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해오름산업벨트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해오름산업벨트의 이용·개발 및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안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정안은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른 특례를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안내륙발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여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유사 입법례인 「해안내륙발전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두지 않고 ‘다른 계획과의 관계’ 규정을 두어 종합계획이 해안권

및 내륙권에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데,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 또한 「해안내륙발전법」에 따른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및 각종 계획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계획과의 조화’를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종합계획은 해안권 및 내륙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계획은 해당 분야의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별도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립하게 되므로 본 제정안의 발전계획이 타 법률에 따른 계획에 일률적으로 우선함을 규정하는 것은 분야별 국가 정책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제2장(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의 수립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5조), 관할 시·도지사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제 정 안

제2장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5조(발전계획 수립과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오름산업벨트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협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5년마다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기간산업 고도화 및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
5. 비행안전구역 및 장애물제한표면 개발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7. 산업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물관리 및 하천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9.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광역교통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
11. 첨단이차전지·원전 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12.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1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에 관한 사항
14. 해오름산업벨트의 조성·발전 사업비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15. 해오름산업벨트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해오름산업벨트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정 안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울산광역시 및 경상북도지사(이하 “관할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관할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해오름산업벨트에 대한 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관할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해오름산업벨트에 대한 발전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7조에 따른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발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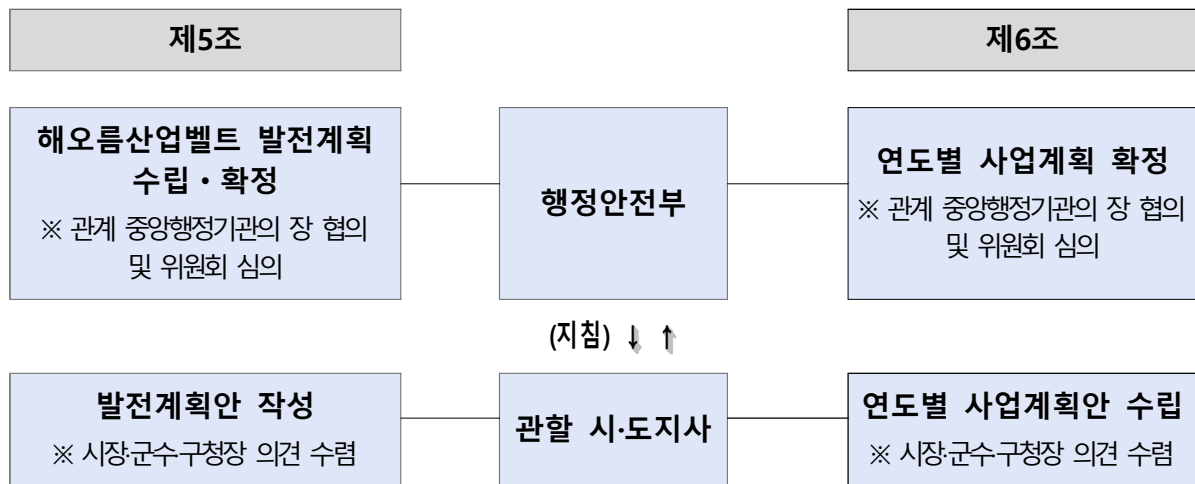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 ① 관할 시·도지사는 제5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발전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7조에 따른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연도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과 협의
를 거쳐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②관할 시·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계획안을 기초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해오
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안 제5조).

관할 시·도지사는 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해오
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안 제6조).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제정안은 발전계획에 ‘물관리 및 하천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안 제5조제2항제8호),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개별

법에 따라 국가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며,⁶⁾ 전국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수자원의 특성상 물의 치수, 이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 계획과 같은 방향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어 발전계획이 수자원 관련 국가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만,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발전종합계획 수립 지침과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는 절차를 규정하고(안 제5조),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연도별 사업계획 안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므로(안 제8조) 국가계획과의 상충으로 인한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발전계획이 다른 국가계획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다른 계획과의 관계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⁷⁾

6) [참고] 수자원 관련 국가계획

- 국가물관리기본계획(「물관리기본법」 제27조)
- 유역물관리종합계획(「물관리기본법」 제28조)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수자원법」 제18조)
- 하천기본계획(「하천법」 제25조)

7) 예) 제00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에 따른 발전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른 계획과의 조화를 규정한 입법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철도물류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간교통망계획,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8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②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30조에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역 발전계획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고, 정부는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강원특별법」 및 「전북특별법」⁸⁾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의 설치(안 제7조 및 제8조)

제3장(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의 설치)은 해오름산업벨트의 발전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안 제7조), 사무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을 설치함(안 제8조).

제 정 안

제3장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의 설치

제7조(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 ① 해오름산업벨트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발전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해오름산업벨트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울산광역시장·경상북도지사
3. 문화·산업·경제·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 ①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을 둔다.

②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정 안

1.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
 3. 위원회 의안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 지원
 4. 그 밖에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에 필요한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너지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오름산업벨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는 것은 해오름산업벨트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 시·도의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에 따른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으로,⁹⁾

동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하고,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¹⁰⁾ 자문위원회등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무기구(기획단 등)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¹¹⁾

이에 제정안 또한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국무총리 소속)와 관련 기획단을 신설하기보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하여 초광역권발전계획(법 제2조제5호,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산업발전을 촉진할 협력사업을 실시)의 심의를 담당하는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시대위원회(대통령 소속)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사무기구인 지방시대기획단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²⁾

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63조(기능)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은 제정안 심사과정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신설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활용하도록 수정된 바 있음.¹³⁾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고려할 때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시대위원회 등 기존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7.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조정에 관한 사항
11.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제7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2.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표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3)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발전종합계획 등의 심의·의결 등)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심의·의결한다.

1.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3.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변경 및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4.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필요성·적정성·공익성 등에 관한 검토
5.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해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 및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의 시행 등(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4장(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의 시행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발전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안 제9조),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요건을 정하며(안 제10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1조).

제 정 안
제4장 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의 시행 등 제9조(사업시행자) 해오름산업벨트에 관한 발전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하 “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10조(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의 시행 승인) ① 사업시행자(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

제 정 안

우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당 사업이 울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경우: 울산광역시장
2. 해당 사업이 경상북도 포항시 또는 경주시에서 시행되는 경우: 포항시장 또는 경주시장
3. 해당 사업이 경상북도 포항시와 경주시 모두에서 시행되는 경우: 포항시장 및 경주시장
4. 해당 사업이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시행되는 경우: 울산광역시장 및 포항시장
5. 해당 사업이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시행되는 경우: 울산광역시장 및 경주시장
6. 해당 사업이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및 경주시에서 시행되는 경우: 울산광역시장, 포항시장 및 경주시장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제 정 안

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 다목 및 마목의 계획으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및 형질 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4.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8.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안 제10조, 사업의 시행승인)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통상적인 사업절차와 유사한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사업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사 입법례¹⁴⁾를 고려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통상적인 사업절차상 개발사업을 완료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에게 받아야하는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⁵⁾

14)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른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 3. (생략)

② ~ ③ (생략)

⑧ 제13조제1호(국가) 및 제2호(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5)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개발사업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개발사업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인 국가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인 사업시행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안 제11조, 인·허가등의 의제)

인허가의제는 하나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허가, 인가, 특허, 신고, 등록 등 관련되는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개발사업 시행 시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각각 받도록 하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신속한 시행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음.¹⁶⁾

인허가의제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개별 인허가 제도는 해당 개별법의 취지에 따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규제 형식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기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16)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377.

[인·허가 의제 관계부처 신중검토 의견]

구분	부처 의견	
인·허가 등의 의제	국토교통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심의가 필요한 만큼, 개별법에 따른 별도 위원회보다는 기존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전문적인 심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위원회
	산업통상 자원부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 「산업집적법」 제20조제1항에서 수도권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 내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설립을 원칙 금지하면서, -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수도권에 적용되는 제한조치로서, 해오름산업벨트(울산, 포항, 경주 일원)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으로 삭제 필요
	환경부	8.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 「하천법」 제4조는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익이 아닌 특정 단체 또는 조직의 이익을 위한 하천공사의 승인, 하천공사의 허가, 하천점용허가는 곤란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마.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특례(안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1) 에너지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례(안 제12조)

제 정 안
제12조(에너지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오름산업벨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해오름산업벨트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대하여는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과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¹⁷⁾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 증대를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라 함)이 제정(2023.6.13.)되어 2024. 6. 14.부터 시행되고 있음.

「분산에너지법」 제37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의 활성화가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¹⁸⁾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오름산업벨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1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1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권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의 원활한 공급과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한 분산에너지의 활성화가 특별하게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의 협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청취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법」 제45조에서는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⁹⁾ 제정안은 해오름산업벨트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특례 지역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기업체에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어 신산업 유치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²⁰⁾ 전기요금 차등시행시 해오름산업벨트는 원전소재지역으로 전력자급률이 높아(울산 102%, 경북 184%) 전기요금 수혜가 예상되어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은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전기사용자 편익 증진, 안정적 전력공급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종합 검토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법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특구 지정을 규정할 경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준비 중인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훼손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3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이하 이 조에서 “전력시장”이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해제에 관한 특례(안 제13조)

제 정 안
제13조(개발제한구역해제에 관한 특례) ① 관할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²¹⁾에도 불구하고 해오름 산업벨트 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총 면적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100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²²⁾에도 불구하고 당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관할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할 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도지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관할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3조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100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여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때에는 당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환경부장관의 협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에 따른 개발 시 개발제한구역 활용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인접 지자체 간 이견 및 환경훼손 우려 등의 쟁점사항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으며, 별도의 특례 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유사입법 채도로 개발제한구역 제도 붕괴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가 차원에서 광역적·장기적인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의 시·도 이양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2)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비행안전구역 · 장애물제한표면 및 하천 복개에 관한 특례

제 정 안
제14조(비행안전구역 · 장애물제한표면 및 하천 복개에 관한 특례) 국가는 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비행과 국가 수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6조 및 제10조, 「공항시설법」 제34조 및 「하천법」 제46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²³⁾

안 제14조는 국가는 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비행과 국가 수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안전구역의 예외,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구조물 등의 설치 허용 및 하천 복개 행위의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울산공항 및 포항경주공항 등 도심 속에 위치한 공항으로 인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항시설법」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어 이를 완화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국가 하천의 공사, 개발 등 주요 권한을 국가에서 가지고 있어 지역

2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①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지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항시설법」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제4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이후에는 해당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구조물·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할 수 있다.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과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하천자원의 관리·활용을 시·도 지사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각 소관 부처(국방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에서는 안전 등의 사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특례 관계부처 신중검토 의견]

구분	부처 의견	
비행안전구역·장애물제한 표면 및 하천 복개에 관한 특례	국방부 (신중검토)	○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과 비행을 위하여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안 제14조에 의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6조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군용항공기의 충돌 및 추락 등 <u>안전상 심각한 사고</u> 가 발생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 (신중검토)	○ 항공기 충돌 방지 등 <u>항공안전</u> 을 위해 「공항시설법」 적용 필요
	환경부 (신중검토)	○ 「하천법」은 수생태 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하천법」 제46조는 하천시설을 망가뜨리는 행위, 토석을 버리는 행위 등 하천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u>하천의 복개</u> 는 생물서식지 파괴, 악취발생, 토사퇴적 등 생태적 문제 유발로 <u>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보전</u> 이라는 <u>하천관리 기본원칙</u> 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u>하천 통수능력</u> 에도 영향을 미쳐 <u>하천 안전사고 발생 우려</u> 가 크므로 삭제 필요

4)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특례(안 제15조)

제 정 안
제15조(국가산업단지 지정요청·개발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²⁴⁾ 관할 시·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요청받은 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오름산업벨트 내의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관할 시·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안 제15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권한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국가산업단지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는 국가산업단지 내 유희부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확장하고, 현행 시행령에서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 업무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일부 위임되어 있으나, 토지이용계획은 제외되어 있어²⁵⁾ 지역 특성에 맞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이용계획을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및 확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국가 전체 측면에서의 산업 육성 필요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안 제15조제3항과 관련하여 국가산업단지의 주요 기반시설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국토교통부가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소관부처 또는 이를 이관받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의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법 제2조제9호바목의 사업 중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산업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에 관한 특례(안 제16조)

제 정 안
제16조(산업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해오름 산업벨트의 인력양성과 교육지원을 위하여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교 공동 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이 해오름산업벨트로 이전·설치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16조는 해오름산업벨트에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교 공동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과 기업체 수요에 맞는 특정연구기관²⁶⁾의 이전·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감소라는 대학의 어려운 현실과 대규모 재정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

2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초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려할 때, 신규 국립대 설립 등은 신중한 검토 필요하며, 현재도 「국립학교 설치령」²⁷⁾ 등을 통해 국립대학의 설치 또는 위치 변경 등이 가능하므로 별도 법률로 특례를 규정할 실익은 적다는 입장임.

27)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명칭 등)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학교의 명칭·소재지 및 과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학교의 명칭·소재지 및 과정(제3조 관련)

1. 대학

학교명	소재지	학교명	소재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원특별자치도	국립안동대학교	경상북도
강원대학교	강원특별자치도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전라남도
...	...	...	...

6) 광역교통망 구축 등에 관한 특례(안 제17조)

제 정 안
제17조(광역교통망 구축 등에 관한 특례) ①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및 경주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대도시권²⁸⁾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오름산업벨트 광역교통망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²⁹⁾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정안 제18조는 해오름산업벨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2조제1호의 대도시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포항시를 대도시권에 포함하도록 하고,

해오름산업벨트 광역교통망의 신속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오름산업벨트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광역교통망(전철, 철도) 사업은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국가

2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거제시·밀양시
--------	---

29)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예산 지원이 필요하나, 포항시의 경우 「광역교통법」상의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상위계획인 광역교통시행계획³⁰⁾에 반영할 수 없어 해오름산업벨트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포항시를 대도시권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중심도시인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 포항시로의 광역통행량이 높지 않은 수준이며,³¹⁾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사유로 포항시를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등을 위해 개별법 보다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해오름산업벨트 광역교통망 구축 관련 불특정 사업에 대한 포괄적·항구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제도의 형해화 및 유사사례 등으로의 법제화 파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교통계획(이하 “교통계획”이라 한다)에 우선한다. 다만, 단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이동하는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통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부산·울산 기준, 포항시로의 광역통행량: 0.7~2.9% 수준

(부산 기준) 시외 유출입 통행량: 울산(15.7%) > 양산(23.5%) > 김해(23.7%), 창원(18.3%) > 거제(1.6%) > 밀양(1.4%) > 경주(0.9%) > **포항(0.7%)** 順

(울산 기준) 시외 유출입 통행량: 부산(37.5%) > 양산(24.2%) > 경주(19.2%) > **포항(2.9%)** 順

7) 의료·교육시설 설치 지원(안 제19조)

제 정 안
제19조(의료·교육시설 설치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설립 등 해오름산업벨트의 의료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및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 등 해오름산업벨트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 제19조는 해오름산업벨트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환경 및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울산지역은 공공의료 인력, 병상, 치료실적 등 의료인프라가 전국 하위 수준으로 의료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크며,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국립중앙의료원 ‘2022년 공공보건의료통계’ 울산지역 현황

- (인구 100만명당 공공의료기관수) 0.9개 / 전국 평균 4.4개
- (인구 10만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14개 / 전국 평균 123.1개
- (인구 10만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0.4명 / 전국 평균 25.3명

* 자료: 울산광역시청

참고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국립학교는 국가가 설립하고, 공립학교는 지자체가 설립하며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므로, 대안학교 설치를 위한 비용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기획재정부는 공공의료 수행기관 외 의료기관을 국비 지원한 사례가 없으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8) 해오름산업벨트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등

제 정 안
제18조(첨단이차전지·원전 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국가 및 관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오름산업벨트 내 첨단이차전지 및 원전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생태환경보전, 하천시설 유지보수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2. 중소기업, 창업·취업 지원 등 지방정부와 유사·중복성이 크고,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 ③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 예산, 장비 및 인력을 동시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해오름산업벨트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 수행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안 제20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

제정안 제2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특별지방행정기관³²⁾의 소관 사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고, 생태환경보전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중소기업, 창업·취업 지원 등 지방정부와 유사·중복성이 큰 사무 등을 우선적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³³⁾

지방시대의 실현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환경 분야 등에 대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인력 등의 이관을 통해 지역개발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로 보임.

「전북특별법」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전북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의 전북자치도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유사 입법례와 관계 부처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심사

32) 「정부조직법」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3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① 국가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 유사 입법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5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① 도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전북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의 전북자치도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참고로, 환경부는 ‘생태환경보전’은 단일 지방자치단체 경계를 넘어 보전지역·유역 단위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무로 현행대로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하천시설 유지보수’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국가하천 관리는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이관사무의 예시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경우, 직접사업 없이 국가 사무를 관리하고, 현장소통 및 접점기능, 지역 유관기관 총괄기능 등을 수행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사·중복되는 사무가 없으며, 우선 이관 사무를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안 제21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특례)

제정안 제21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³⁴⁾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해오름산업벨트

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오름산업벨트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6조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계정을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안과 같이 해오름산업벨트를 위한 별도 계정 설치를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470호)가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2024.9.2.)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기획재정부는 ①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체계상 특별자치시·도 설치를 통해 국가기능 이양 등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별도 계정을 운영 중이며, ②한정된 재원 내에서 지역별 계정이 증가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규모 축소 및 효율적 재원배분 저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4) 현행법 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별도 지역계정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이 있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바. 보칙 및 벌칙

제정안은 보칙 및 벌칙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개발촉진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 감독을 위한 자료 제출과 출입·검사 및 감독 규정, 사업시행승인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 등 ‘보칙규정’과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규정’ 마련이 필요해보임.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과 비교 >

제정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1조(자료 제출과 출입·검사)
	제22조(감독)
	제23조(청문)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5조(벌칙)
	제26조(양벌규정)
	제27조(과태료)

(보칙)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 감독 등을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과 같이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청문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참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21조(자료 제출과 출입·검사) ①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하면 제1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3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4조제6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 사업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으나(안 제10조제3항),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에 대한 공사 중지, 철거명령, 시정명령 등의 근거는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사 입법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공사의 중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22조(강득) ① 사업승인권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별칙)

① 보칙규정에서 “자료 제출과 출입검사” 규정을 신설할 경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을 참조하여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참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27조(과태료)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승인권자가 부과·징수한다.

② 안 제10조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칙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유사 입법례와 비교하여 별칙을 신설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2.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부칙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 의 처
02)6788-5336